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1.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11. 18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8. 11. 20

다. 상정일자 :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08. 11. 28)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안 흥 기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마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개정(안 제5조제3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을 반영하여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함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안 제8조)

「임대주택법」(전부개정 법률 제8966호, 2008.3.21)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6.20)에 따라 임대주택 인용조문 수정

◦ 아파트형공장등에 대한 감면 개정(안 제12조)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용어 정비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개정(안 제13조)

「지방세법」 제180조(정의)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개정(안 제14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법률 제7558호, 2005.5.31)에 따라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안 제16조)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 규정 감면대상 명확화

◦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안 제22조)

법률명칭 변경 및 관련 조문 변경사항 반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 2. 29)

다. 개정근거

◦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내지 제9조

◦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통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1131(2008.09.24)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승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8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와 불일치되는 용어 정비를 위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변경안이 2008년 10월 9일 각각 이첩·시달됨에 따라 관련 제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임.

◦ 안 제4조에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임대주택법 」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아파트형 공장등에 대한 감면에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에서「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 으로 인한 법명 및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법명 및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인용 법조문 및 용어 등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